

[별표 3] <개정 2008.12.31>

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(제21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징금 금액
1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3조제2항제1호	6억원 이내
2.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	법 제23조제2항제2호	2억원 이내
3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	법 제23조제2항제3호	10억원 이내